마을기업지원법안 (이성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369

발의연월일: 2024. 9. 26.

발 의 자:이성권・안철수・조승환

이헌승 • 주진우 • 안상훈

조지연 · 강승규 · 김소희

김용태·강명구·김 건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마을기업은 지역에 존재하는 유형과 무형의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의지역문제를 해결하고,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2010년 「마을기업 육성계획」을 수립한 후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되었음.

2023년 12월 기준 1,80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, 12,265명의고용, 3,09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성과를 내고 있음. 그러나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자활기업 등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은 근거법령을 두고있으나, 마을기업은 근거법령이 없이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법령을 제정하여, 지역의 뿌리경제로서소득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마을기업의 순

기능을 확대하고,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지역공동체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마을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 써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유· 무형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"마을기업"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설립하고 그 마을의 지역자 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,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 여 설립·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사업체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마을기업을 말함(안 제2조제1호).
- 다. 국가는 마을기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 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라. 마을기업은 수익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마을기업의 유지· 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,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여야 함(안 제4조).
- 마.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시·도별 지원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의 활동과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(안 제8조제1항).

- 바.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각 마을기업지원위원회 시·도별 마을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음(안 제9조 및 제10조).
- 사. 마을기업은 유·무형의 인적·물적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사업,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,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사업, 국가유산 보존·관리·활용 사업 등을 할 수 있음(안 제11조).
- 아. 국가는 마을기업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안 제13조제1항).
- 자. 시·도지사는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마을 또는 5인 이상 참여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 등을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, 예비마을기업이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,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(안 제14조).
- 차. 행정안전부장관은 청년구성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마을기업을 청년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, 출자자수 요건의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(안 제15조).
- 카.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고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마을기업의 육성·지원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(안제18조 및 제19조).

마을기업지원법안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역공동체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마을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유·무형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마을기업"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설립하고 그 마을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,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·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사업체로서 제12조에 따라지정한 마을기업을 말한다.
 - 2. "마을주민"이란 마을기업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되는 자로서 마을기업이 소재하는 읍·면·동의 동일한 생활권을 기반으로 거 주하는 자를 말한다.
 - 3. "청년마을기업"이란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주도하여 설립한 마을기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청년마을

기업을 말한다.

- 4. "예비마을기업"이란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마을 또는 단체 등으로 제14조에 따라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마을기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마을기업의 역할과 의무) 마을기업은 수익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마을기업의 유지·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, 지 역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.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마을기업의 육성·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추진체계

- 제6조(마을기업 육성·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) ① 행정안전부장 관은 마을기업의 육성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기업 육성·지원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 - 1.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
- 2. 마을기업 및 마을기업의 사업에 대한 지원시책
- 3. 마을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 및 홍보
- 4. 마을기업 인력양성 및 대표자와 구성원 교육 계획
- 5. 마을기업지원기관 등 지원체계 구축
- 6. 그 밖에 마을기업의 육성·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시·도별 마을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 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자치시장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 다)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의 육성·지원을 위한 시·도별 지원계획(이하 "시·도별 지원계획"이 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시·도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.
 - 1. 시ㆍ도별 마을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 - 2. 시 · 도별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
 - 3. 마을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 및 홍보
 - 4. 시 · 도별 마을기업 현황과 성과분석

- 5. 시 · 도별 마을기업에 대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
- 6. 시 · 도별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 교육
- 7.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시·도별 마을기업 육성·지원에 필요한 사항
- ③ 시·도지사는 시·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관할 시·도에 소재하는 마을기업과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"시장 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- ④ 그 밖에 시·도별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제8조(실태조사)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연도 별 시행계획 및 시·도별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의 활동과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,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 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,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,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마을기업지원위원회) ① 마을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정책의

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마을기업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- 1. 마을기업 육성 ·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
- 2. 마을기업의 사업에 관한 평가 · 관리
- 3.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4. 마을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
- 5. 우수 마을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마을기업의 육성·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시·도별 마을기업지원위원회) ① 시·도지사는 시·도별 지원 계획과 관할 구역 내 마을기업의 지원시책 등의 심의 등을 위하여 시·도에 시·도별 마을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시·도별 마을기업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3장 마을기업의 지정 및 지원

- 제11조(마을기업의 사업) 마을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 - 1. 유 · 무형의 인적 · 물적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사업
 - 2.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
 - 3.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사업
 - 4. 국가유산 보존·관리·활용 사업
- 5. 그 밖에 마을기업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2조(마을기업의 지정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, 심사를 거쳐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 ·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세제 · 재정 등의 지원을 받는 기업 ·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 - 1. 마을주민이 대표자 및 구성원일 것
 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수·출자비율·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을 충족할 것
 - 3. 「민법」에 따른 법인,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, 「협동조합기본 법」에 따른 협동조합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」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
 - 4. 마을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동할 것
 - 5. 지역의 소득 · 일자리창출 기여, 지역자원의 활용, 사업계획의 적

합성·공공성·지역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② 그 밖에 마을기업의 신청·심사·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· 기준·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3조(마을기업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경영·기술·세무·노무·회계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 제공
 - 2. 전문인력의 육성 및 마을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 련
 - 3. 시설비 등의 지원 · 융자
 - 4. 부지구입 융자
 - 5. 국유・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・사용
 - 6. 마을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
 - 7. 「법인세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감면
 - 8.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보험료 및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연금보험료
 - 9. 그 밖에 마을기업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 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마을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4조(예비마을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) ① 시·도지사는 마을기 업 지정을 희망하는 마을 또는 5인 이상 참여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 등을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시·도지사는 예비마을기업과 사업 이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,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예비마을기업이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·도지사는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 - ③ 시・도지사는 예비마을기업이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.
 - ④ 그 밖에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청년마을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청년 구성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마을기업을 청년마 을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마을기업에 대하여 출자자수 요건 의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. 제16조(마을기업의 날) ① 국가는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

- 고, 마을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마을기업의 날로 하고, 마을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마을기업 주간으로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7조(마을기업의 지정취소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
 - 3.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 - 4.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- ② 그 밖에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장 마을기업 지원 기반조성

제18조(마을기업지원센터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·지 워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지원센터(이

- 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- 1. 마을기업의 정착과 활성화에 관한 조사 · 연구 및 정책 건의
- 2. 마을기업에 대한 인식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
- 3. 마을기업 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
- 4. 마을기업 사업자 간의 연계 · 협력 체계 구축 · 운영
- 5.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민간 기관·단체 간의 연계·협력
 ·조정
- 6. 마을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부설 기관 운영
- 7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마을기업 관련 사업
- 8. 그 밖에 마을기업의 정착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하는 사업
- ③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며,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④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9조(마을기업지원기관의 설치 등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 구청장은 마을기업의 육성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는 마을기업지원기관(이하 "지원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 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기업의 육성·지원과 관련된 관할 지역의 기관,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기관

- 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1. 지역자원의 조사 및 사업의 발굴
- 2. 마을기업과 주민 간의 연계협력
- 3. 마을기업과 지역에 소재한 기업, 기관, 법인, 단체와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
- 4. 마을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
- 5. 마을기업에 관한 주민 교육 및 홍보
- 6. 마을기업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
- 7. 마을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 및 홍보
- 8. 그 밖에 마을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
- 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20조(포상)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과 장려를 위하여 사업성과와 운영현황이 우수한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- 제21조(감독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마을기업에 대하여 사업·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마을기업의 장부 및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 - 1. 제12조에 따른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
 - 2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약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

필요가 있는 경우

- 3. 마을기업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및 검사를 한결과 필요하면 시정 및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과 마을기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 ·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마을기업에 대한 조사·검사·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.

제5장 보 칙

- 제22조(권한·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마을기업에 관한 전문적 인 역량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·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

위탁받은 기관·법인 및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제23조(동일명칭의 사용금지) 마을기업이 아닌 자는 마을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
- 제24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을 받은 자
 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정·개선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 - ② 제23조를 위반하여 마을기업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 · 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마을기업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으로 본다.

- 제3조(마을기업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한 마을기업지원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지원기관으로 본다.
- 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9. "마을기업"이란 「마을기업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을 말한다.